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18-236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3. 11. 8.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 소속 ㅇㅇ행정기관으로, 「舊 개인정보 보호법¹⁾」 (이하 '舊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2.7.)가 접수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23.3.13.~'23.9.6.)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舊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¹⁾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피심인은 관내 학원현황 자료를 '23.3.13. 기준 아래와 같이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건)
취이취하 지그	학원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강사성명,	'10.12.6.	4 770 74
학원현황 자료	교습비	~ '23.3.13.	4,779건

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항목 및 규모

관내 학원강사의 주민등록번호 4,779건이 유출되었고, 정보공개 자료에 포함된 학원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강사성명, 교습비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이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학원</u> <u>또는 교습소의 명칭</u>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u>대표 전화번호</u>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u>교습비</u>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운 영자 명단, <u>강사명단</u> 8. 교습자 명단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시		수요 내용	
2023.	1.11. (13:41)	ㅇㅇㅇㅇㅇㅇㅇ청 관내 학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됨	
2023.	1.26. (20:22)	정보공개시스템에 정보공개 자료 게시	

2.2. (14:28)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인이 내려받음
2.3. (10:30)	청구인이 정보공개 재 청구
2.3. (10:35)	정보공개 담당자가 1차 정보공개 자료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강사명단 칼럼 뒤에 숨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지 함
2.6.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컴퓨터에서 정보공개한 학원현황 파일 삭제 조치 및 청구인 확인서 작성
2.7.	개인정보 유출 신고, 유출 통지(우편,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출안내)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관내 학원현황 자료(엑셀파일)에 관내 학원강사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학원 강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관내 학원현황 자료(엑셀파일)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면서 해당 자료에 학원강사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관내 학원 강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 청구인 1명에게 유출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9.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9.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이행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舊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이하'舊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舊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3)」(이하 '舊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舊보호법제24조제3항, 제29조, 舊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해당한다.

²⁾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2022. 10. 20. 시행

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시행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 행위는 舊보호법제24조제3항, 제29조, 舊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면제

「舊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4)」(이하'舊 과징금부과기준')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가. 2차 조정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 2차 조정된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같은 법 舊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명에게만 유출된 점, 유출인지 즉시 정보공개 청구인을 찾아가 유출 자료를 회수.삭제한 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엑셀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유출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舊 과징금 부과 기준' 제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10. 20. 시행

< * 과징금 면제 사례 : ㅇㅇㅇㅇ고등학교 >

- ▶ 장애관련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41건이 포함된 '2020 특수교육대상자명단'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면지에 섞여 유출
-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면제(제8조제2항제2호다목)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舊시행령 제30조제1항, 舊고시 제6조제3항(접근통제), 제7조제1항(암호화 전송)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제6호, 같은 법 舊시행령 제63조의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안전성확보 미조치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단위: 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 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舊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5)」(이하 '舊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가중) [별표2]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 2023. 3. 8. 시행

<	* 과태료의	가중기준((제8조	관련)	>
---	--------	-------	------	-----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정도	1.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에 해당 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2.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 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 2개 : 舊고시 제6조제3항(접근통제), 제7조제1항(암호화 전송)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 위반에 대해 '舊 과태료 부과 지침' 제7조 및 [별표1] 감경기준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 완료하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감경률 적용 보고」('21.11.24. 위원회 보고)에 따라 감경률 상한 범위인 50%를 적용 ※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협조 · 자진 시 등	1.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이내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이내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이내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에게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 가중.감경을 거쳐 **총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 >

(단위 : 만원)

개인정보보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		기준 금 액 (A)	기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24조제3항, 제29조 제75조제2항제		600	60	300	36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개선권고

피심인에 대하여 舊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 한다.

- 가.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보호실태를 점검하여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분 결과의 공표

舊보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舊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11.18. 시행)」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한 행위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2023.10.11. 시행)」제5조(공표기간) 보호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경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위반행위를 순번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2					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ㅇㅇㅇㅇㅇ청	법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2023 11 8.	개선권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보호실태 개선 및 교육 실시)			
	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		교육 <i>글(1)</i> 과태료 360만 원				
	2023년 11월 8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舊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